



유리관 제조·판매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사건

25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도쿄지방법원	사건번호	평성15년(와) 제27899호
판결 일자	2004. 8. 30.	판결 결과	원고 패소
원고	주식회사 나리시게		
피고	1. 유한회사 다이와유니온, 2.유한회사 에스티사이언스, 3. A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2조1항, 3조1항, 2조4항, 민법 709조		
영업 비밀	유리관제조방법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퇴직금, 업무위탁계약, 비밀관리성		

02 사건 개요

원고는 1985년 1월 28일에 설립되어, 마이크로머니 플레이어를 비롯한 바이오테크놀로지 관련 기기의 개발, 제조,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 A는 원고 회사의 직원이었으나 2002년 1월 퇴직하여 피고 유한회사 에스티사이언스(이하 ‘에스티사이언스’)를 설립했다.

원고는 1992년 2월 피고 유한회사 다이와 유니온(이하 ‘다이와 유니온’)에게 유리관의 제조를 위탁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다이와유니온은 2002년 9월경까지 유리관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했다

그러나 피고 다이와유니온은 자사공장에서 제조한 유리관을 2002년 10월경부터 피고 에스티사이언스에게 판매하였고, 피고 에스티 유니온은 그 유리관을 일반사용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다이와유니온에게 해당 유리관의 제조금지를, 피고 에스티사이언스에게 본건 유리관 판매 금지를, 피고A게 퇴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 고	⇔	피 고
본건 제조방법은 비밀관리성, 유용성, 비공지성을 가지는 영업비밀이다		본건 제조방법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다이와유니온)
제조위탁 계약 시 이루어진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에 관한 계약 위반이다		원고 주장과 같은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다이와유니온)
피고A가 수령한 퇴직금은 피고A와 원고사이에 체결한 취업규칙계약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의무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를 진다.		원고에게 공개받은 정보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사건관련 제품은 스스로 고안 및 개발한 제품화 기술에 의한 것이다(다이와유니온)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바 없다.

04 판결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에 관한 계약에 대한 서면이 전혀 교환되지 않은 점, 보호유지의무나 경업의무에 대상이 되는 내용, 범위들이 명확히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피고 다이와유니온 및 피고 에스티사이언스에 대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본건 유리관의 제조방법을 공개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본건 제조방법의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어있지 않고, 본건 제조방법에 속하는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 상황이 확실하지 않으므로(비밀관리성) 원고의 피고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A에 대해서도 상기와 같이 피고 다이와유니온이 본건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유리관을 제조했다는 사실, 원고 주장과 같은 부정경쟁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05 Key Point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보호하려고 하는 대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해당 정보의 보유자가 관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외부인과 직원에게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

위탁계약 및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에 보호유지의무나 경업의무에 대상이 되는 내용, 범위들이 명확히 드러나게 해야 한다.
